

서울 행정 법 원

2001. 12. 18. 판결선고	인
2001. 12. 18. 원본영수	

제 13 부

판 결

사 건 2001구29533 정당재산및수입·지출내역등등사거부처분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변 론 종 결

2001. 10. 30.

주 문

1. 피고가 2001.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당이 2001. 2. 15.까지 보고한 2000. 12. 31. 현재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과 첨부서류' 등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위 일자의 착오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다.

나. 원고는 참여민주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간사로서, 정치자금의 운영실태를 조사·검증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및 정치개혁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도모할 목적으로, 각 정당의 중앙당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하 '정치자금법'이라 한다)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2000. 12. 31. 현재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과 첨부서류(이하 '정당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이라 한다)의 열람을 한 데 이어, 2001. 7. 9. 피고에게 위 정당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등사, 즉 사본 교부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 7. 20. 원고에게 "정치자금법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에 대한 열람은 가능하나 사본제공은 안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사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가 시민단체인지 개인인지 알 수 없고 만약 시민단체라면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나아가 행정소송에 있어 원고적격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에 의하여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에게 인정되는데, 이 사

건의 원고는 이 사건 등사거부처분에 의하여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행정소송법상의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소장의 당사자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원고 개인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체화된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등사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이를 거부당하는 불이익을 입은 직접 상대방인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의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적격이 있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정치자금법 제24조의2 제1항은 정당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에 관하여 공고 일로부터 3월간의 열람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에게는 헌법상의 알 권리 및 정보공개법에 기하여 기간의 제한 없는 열람·등사 신청권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등사신청을 피고가 거부한 것은 헌법 및 정보공개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만약 정치자금법의 위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위와 같이 3월간의 열람만으로 제한하는 취지라면,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법률규정으로서 위헌이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정치자금법 제24조의2 제1항은 원고가 등사신청한 정당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에 관하여 3월간의 열람제도만을 규정하고 있고 등사신청 및 사본교부에 관하여는 달리 규정이 없는바, 열람과 등사는 별개의 개념임이 분명하고, 3월간의 열람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만으로도 정치자금내역의 공개라는 취지는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정치자금법 규정이 곧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점, 위 정치자금법 규정 신설 당시 헌법상의 알 권리를 직접 근거로 한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공개기간과 방법을 제한하는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정치자금법 규정은 정보공개법의 특별규정으로서 정당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사본 교부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정치자금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 ②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 ③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①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비, 기부금, 보조금등 모든 수입의 일시·금액·건수 및 당비납입자의 성명·주소 기타 명세
2. 차입금, 기관지의 발행 기타 당헌·당규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의 일시·금액 및 대여자의 성명·주소 기타 명세
3. 지출의 일시·금액·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직업

②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원의 후원금·모집금품등 모든 수입의 일시·금액 및 기부를 한 자의 성명·주소·직업. 다만, 제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의 경우에는 기부건별 일시·금액 및 기부방법
2. 정당등에 대한 기부의 일시·금액
3. 기타 모든 지출의 일시·금액·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직업

③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일시·금액
2. 지출의 일시·금액·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회계장부의 종류·서식·기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회계장부의 보존)

정당·후원회·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제22조의 회계장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및 영수증을 이 법에 의한 회계보고를 마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 (회계보고)

① 정당의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 및 후원회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다음해 2월 15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와 후원회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후원회지

정을 철회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공직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의 회계책임자는 선거기간중의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당해 선거일 후 3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후 40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과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정당과 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서 사본과 자체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과 그 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의2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등의 열람 및 이의신청)

-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과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②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이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중 언제든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조사·확인(제2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의3 (선거비용 보고등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비용의 수입금액·지출내역의 보고와 보고서등의 열람 및 이의신청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 갈음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법에 의한 보고등이 있는 때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보고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자료요구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당·후원회·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하여 관계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거나 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공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5조 제2항, 제8조·제10조 제3항 또는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등록신청을 받은 때, 제6조 제2항 또는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등록을 말소한 때, 제15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을 정당에 지급한 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보조금을 반환받은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2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또는 보고를 해태하거나 허위의보고를 한 자
6.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영세서·영수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제19조 제4항·제24조의2 제3항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또는 자료확인이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다. 판단

(1) 정보공개청구권과 정보공개법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 청구권은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9312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헌법재판소 1989. 9. 4. 88헌마22 결정, 헌법재판소 1991. 5. 13. 90헌마133 결정 등 참조).

한편, 위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한 알 권리도 헌법 제21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이 가능하므로, 그 보장의 범위와 한계는 결국 법률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겠지만, 알 권리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실현의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알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1996. 12. 31.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되어 1998. 1. 1.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원칙(제3조)을 규정하면서, 여기서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제2조 제2호)고 하여 공개의 범위에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포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다만 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8조 제2항), 청구인의 정보와의 관련성이나 청구 목적 등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 규정하고(제6조 제1항), 공공기관이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 공개청구의 기간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도 않는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 내지 제한하는 다른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정보공개청구권의 성질 및 제한의 한계와 이를 구체화한 위 정보공개법의 규정내용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치자금법 제24조의2 제1항이 정당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사본 교부를 제한하는 취지인지 여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정당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24조의2 제1항 규정이 위 정보의 사본 교부나 기간(공고일로부터 3월) 경과 후의 공개를 제한하는 취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가) 우선 위 관계 법령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의 공개' 및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제2조)으로 하여, 정당 등의 회계책임자에게 회계장부의 비치 및 수입과 지출내역의 기재의무(제22조)와 보존의무(회계보고를 마친 후 3년간,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및 영수증 포함, 제23조), 매년마다의 재산상황, 수입금액, 지출 및 결산내역(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 첨부)에 관한 회계보고의무(제24조) 등을 부과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보고된 정당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을 공고(제26조)하고 사무소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도록 하는 한편(제24조의2),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그 이의신청사항을 조사·확인하도록 하여 허위기재나 허위보고의 경우에는 벌칙의 제재(제31조 등)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자금법의 제반 규정의 취지는 1차적으로는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을 감독할 수 있도록 정당 등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기초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사용내역 등을 조사, 확인하도록 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정치자금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지는 의미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배분,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는 국가기관으로서의 피고뿐 아니라 일반국민 모두가 이에 대한 감시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당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에 관한 이 사건 정보는 피고뿐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공개되어 이를 감시하는 국민에게 그 비판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정치자금법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보더라도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보고된 정당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을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공고일로부터 3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당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에 관한 3월간의 열람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열람기간이 경과한 후의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바(정치자금법 제24조의3에 따라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보고서 열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3조 제1항은 단서에서 “다만,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누구에게든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이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그렇다면, 위 정치자금법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특히 정당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에 관하여 위 열람기간 동안은 누구든지 아무런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적인 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되고, 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람기간이 경과한 후의 공개가 제한된다거나 열람만이 허용될 뿐 사본 교부는 제한된다

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정치자금법 규정이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위 정치자금법 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정당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에 관한 3월간의 열람에 있어서만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의미이므로, 열람 외의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나 3월이 경과한 후의 공개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체화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되고, 위 정치자금법 규정이 정보공개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인 1994. 3. 16. 신설된 것인 점, 정보공개법상 공개의 범위에 열람 외에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가 포함되어 있고 공개청구권자나 공개청구의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점,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의 성질과 제한의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치자금법 규정이 정보공개법의 특별규정으로서 정당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사본 교부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라는 피고 주장은 헌법과 정보공개법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만약 피고 주장대로 사본 교부에 관하여 달리 규정이 없다고 하여 사본 교부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라고 해석한다면, 나아가 위 정치자금법 규정이 명시하고 있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관리하는 다른 정보의 공개 또한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또한 헌법과 정보공개법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다).

(라) 더욱이 원고의 주장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헌법상의 알 권리 및 정보공개법에 기하여 이 사건 등사신청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등사신청은 정치자금법상의 열람청구와는 청구의 기초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인정여부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한 헌법상의 알 권리 및 정보공개법의 법리에 의하여 할 것이고, 그 법리상 공공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당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사본 교부가 제한된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위와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정치자금법 제24조의2 제1항 규정은 정당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에 관하여 헌법 및 정보공개법상의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될 수 없고(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1069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등사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 및 정보공개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그밖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그밖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열람·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하여 언론에 공표하기까지 하여 정보공개법 제8조 제2항의 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의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거나, 이 사건 정보의 사본 교부가 허용된다면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고 개인사생활의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열람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당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사본교부를 제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의 사본 교부를 허용함으로써 얻는 정치

자금의 투명성 확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의 이익이 피고가 주장하는 막대한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더욱이 이 사건 정보는 정치자금법에 의해 그 작성과 보관, 선거관리위원회에의 보고가 강제되고 누구든지 열람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이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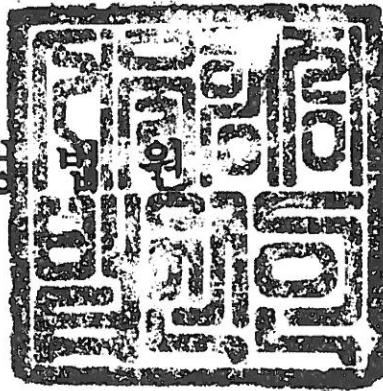
재판장 판사 한위수 _____

 판사 김도형 _____

 판사 유창범 _____

정 본 입 니 다.

서 울 행 정



법원 법원사무관 백 윤

